

 <b>백석대학교</b>	<b>대학원장학금 지급규정</b>	제정일	2019.03.01
		개정일	2025.01.02
		주관부서	대학원교학처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35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.

**제3조(사무관장)**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업무는 대학원교학처장이 관장한다.

**제4조(장학위원회의 구성)**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이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장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1.3.1.>

② 위원장은 대학원위원회 위원장이 되고, 위원은 대학원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며, 간사는 대학원교학처 학생업무 담당 팀장이 담당한다.

**제5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학금 지급의 기본방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
2.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, 수혜기간, 지급 기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
3. 각 대학원에서 추천한 지급대상자의 자격 요건 심사
4. 소위원회 위임사항
5.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 등 부수적인 사항

**제6조(장학금지급 대상)**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가정형편 및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
2.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. <개정 2023.9.1.>
3. 백석학원 산하 교직원
4. 대학원장 및 대학원 보직교원의 추천을 받은 자
5. 대학원 원우회 임원 및 원우회 자체 활동에서 봉사를 통해 학생활동에 기여한 자
6. 학술, 체육, 사회봉사, 학생자치활동 등의 활동으로 본 대학원의 명예를 선양한 자
7.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<개정 2021.3.1.>

**제7조(교내장학금)**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급기준은 「대학원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」으로 정한다.<개정 2023.9.1.>

1. 백석장학금
2. 성적장학금
3. 근로봉사장학금
4. 봉사장학금
5. 외국인장학금

6. 교직원장학금
7. 나눔장학금
8. 백석가족장학금
9. 군목후보생장학금
10. 소망장학금
11. 경건실천장학금
12. 본 교단 목회자장학금
13. 목회자가족장학금
14. 교육지도자장학금
15. 위탁장학금
16. 기독교리더십장학금
17. 사랑장학금
18. 선교리더십장학금
19. 백석학원복음화리더십장학금
20. 학비감면지원장학금
21. 백석리더십장학금
22. 공공리더십장학금

**제8조(교외장학금)** 교외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호와 같다.<신설 2023.9.1.>

1. 기부장학금

가. 지정장학: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지급한다.

나. 일반장학: 장학(소)위원회 심의 후 지급한다.

- ① 교외장학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장학재단, 사회단체, 외부기업체 및 개인이 후원하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22.2.21.>
- ② 외부기탁 장학금의 기부자가 특정인 또는 특정 대학원 재학생, 인원을 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부자의 요구조건에 의한다. <개정 2022.2.21.>
- ③ 기타의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- ④ 매년 일정 금액 이상 장학금을 후원하는 경우 후원하는 개인, 기관, 기업 등의 명칭으로 교외장학금의 명칭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7.1.>

**제9조(지급기간)**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학기 내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23.9.1.>

**제10조(장학금 신청)**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또는 학기말 공지한 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성적장학금 등 지급 요건이 명확한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. <개정 2022.2.21., 2023.9.1.>

**제11조(중복수혜)** 교내장학금의 수혜는 신청한 장학금 중 유리한 두 종류의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 다만, 중복수혜 장학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은 「대학원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」에 따른다. <개정 2021.3.1., 2023.9.1.>

**제12조(신청자격 제한)** 본 대학원 재학생에 한하여 수업연한까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내역은 「대학원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」에서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23.9.1.>

**제13조(자격상실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신청 자격이 상실된다.

1. 학칙 및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
2. 휴학자 및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필하지 못한 자. 다만, 학비 감면의 경우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23.9.1.>
3.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자
4. 소망장학 대상자 중 2개 학기 연속 성적이 2.5 이하인 자 <개정 2021.3.1.>
5. 선정된 장학생이 공정한 기간 내에 장학금 수혜 절차를 필하지 아니한 자
- 6 기타 장학금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자
7. 군목후보성장학, 교직원장학, 백석리더십장학, 백석학원복음화리더십장학 대상자 중 직전학기 성적이 2.5 이하인 자 <신설 2021.3.1.>

**제14조(동점자 처리)**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에 있어 평균평점이 동점자인 경우에는 「대학원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」에 의한다. <개정 2023.9.1.>

**제15조(장학금 금액)** 교내·교외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(입학금 포함) 총액의 범위 내에서 「대학원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」에 의거하여 지급한다. 다만, 교외장학금 중 기부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생활비 명목의 지원금은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3.9.1.>

**제16조(장학금 지급방법)** ① 장학금은 해당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하여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게는 본인계좌로 지급(입금)하되,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원금 상환 처리를 우선으로 한다. <개정 2023.9.1.>

**제17조(장학생 교체)**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교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8조(운영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부총장이 승인한 바에 의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[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칙]은 폐지한다. 다만, 종전의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장학금 종류 신설에 따라 기존 재학생에게 소급적용하지 않는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법인 분리 설립허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 -8699(2024.12.11.) 「학교법인 천안백석학원 법인 설립허가 알림」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적용 등은 종전 내용을 적용한다.